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
----------	---

제출연월일 : 2026. 06.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로서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며
- 이에 따라,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초구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2

- 필요성 : 노인복지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

다. 위탁사무 내용 :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1.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
 2.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노인일자리 사업 등)
 3. 건강생활 증진사업(건강교실, 급식지원, 기능회복지원 등)
 4. 정서생활 지원(상담사업 등)
 5. 사회참여지원(자원봉사 활성화 등)
 6. 재가노인복지사업(병설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7.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
 8.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병설기관	주소	면적	층수	이용대상
양재노인 종합복지관	서초노인주간 보호센터(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73-7	연면적 1724.5㎡	지하2층/ 지상5층	서초구민 (60세 이상)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26.12.22. ~ 2031.12.2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연1,750,000천원 민간위탁금 지급 예상

* 2026년 위탁금액으로 추계

- 인건비 : 1,352,455천원

* 19명 기준, '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사업·운영비 : 397,545천원

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붙임2)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 '26. 6월 :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6. 6월 : 2026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6. 7월 :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
- '26. 9월 : 민간위탁 공고
- '26.10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6.11월 : 위·수탁협약 체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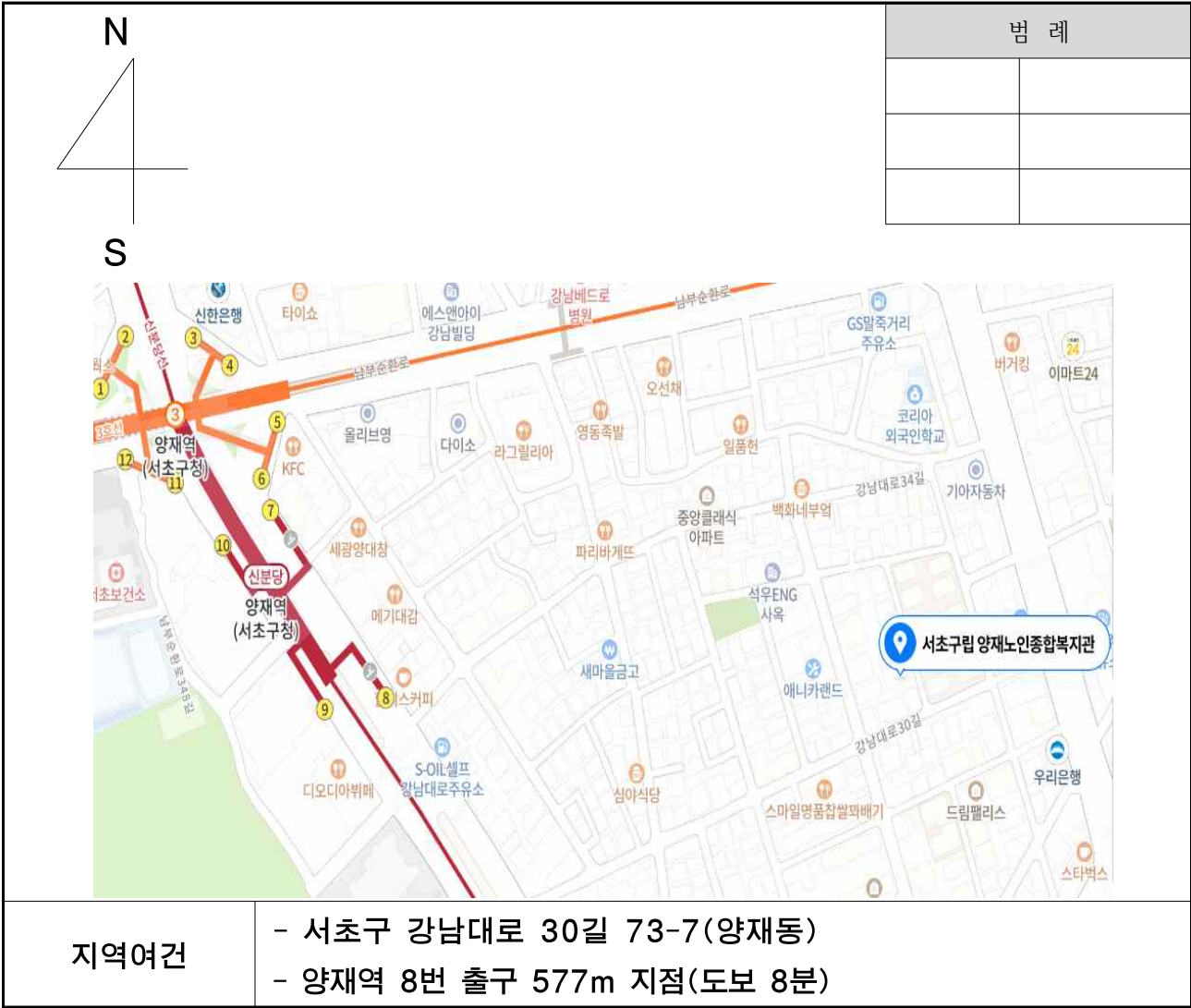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라·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2

나. 예산조치 : 서초구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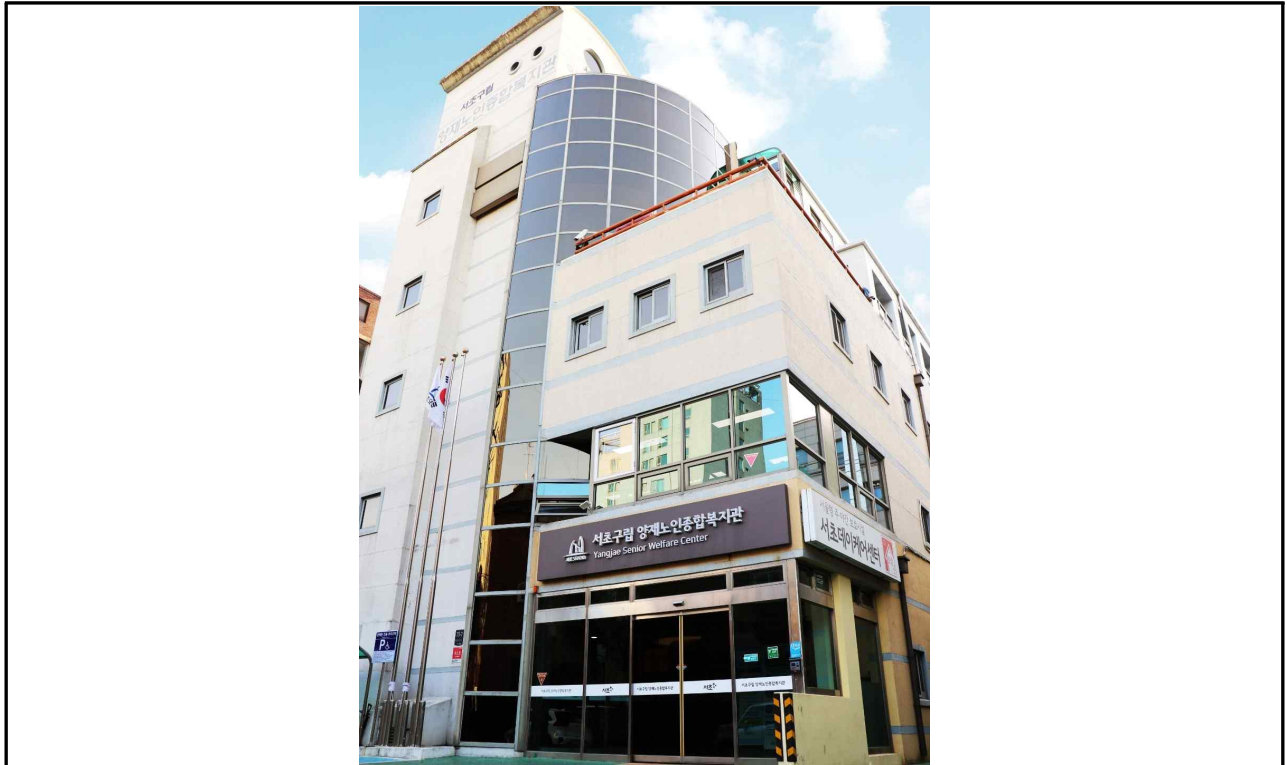
붙임1

시설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시설 위치도



□ 현장사진



사진설명

양재노인종합복지관(전경)



사진설명

로비(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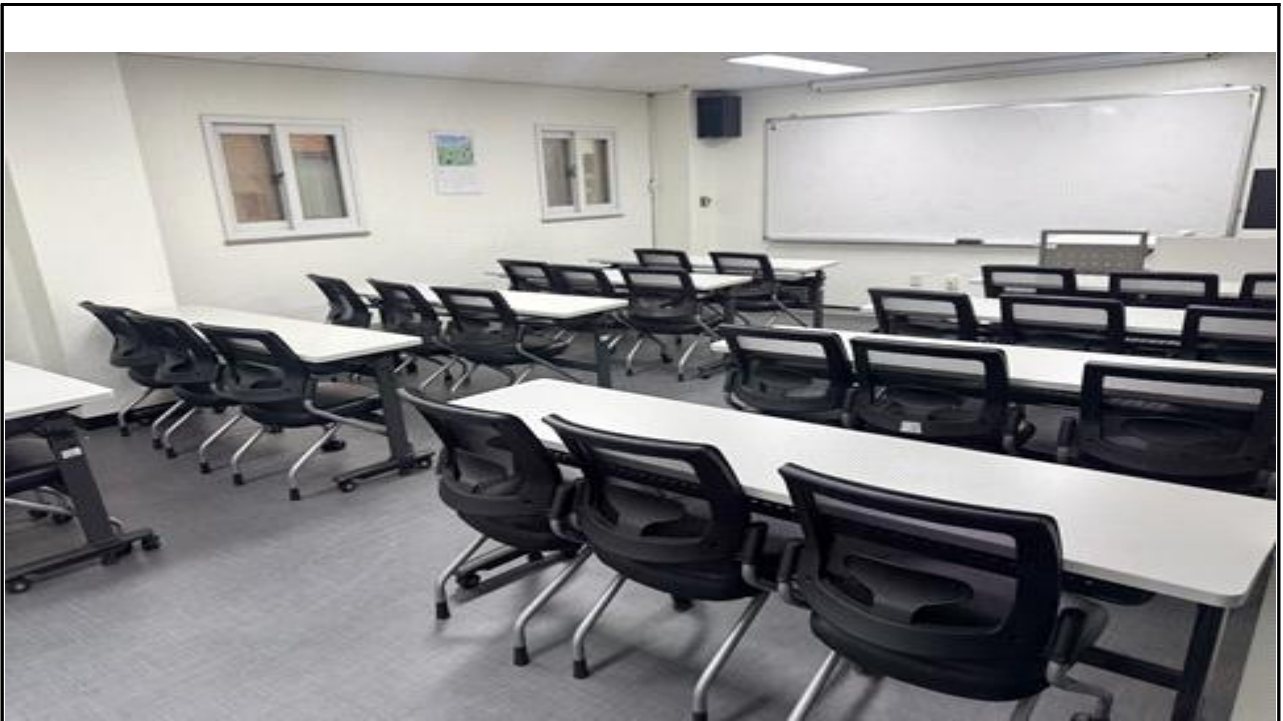
사진설명

서리폴 어르신 레스토랑(지하1층)



사진설명

물리치료실(1층)



사진설명

배움터(3층)



사진설명

서예실(3층)



사진설명

쉼터(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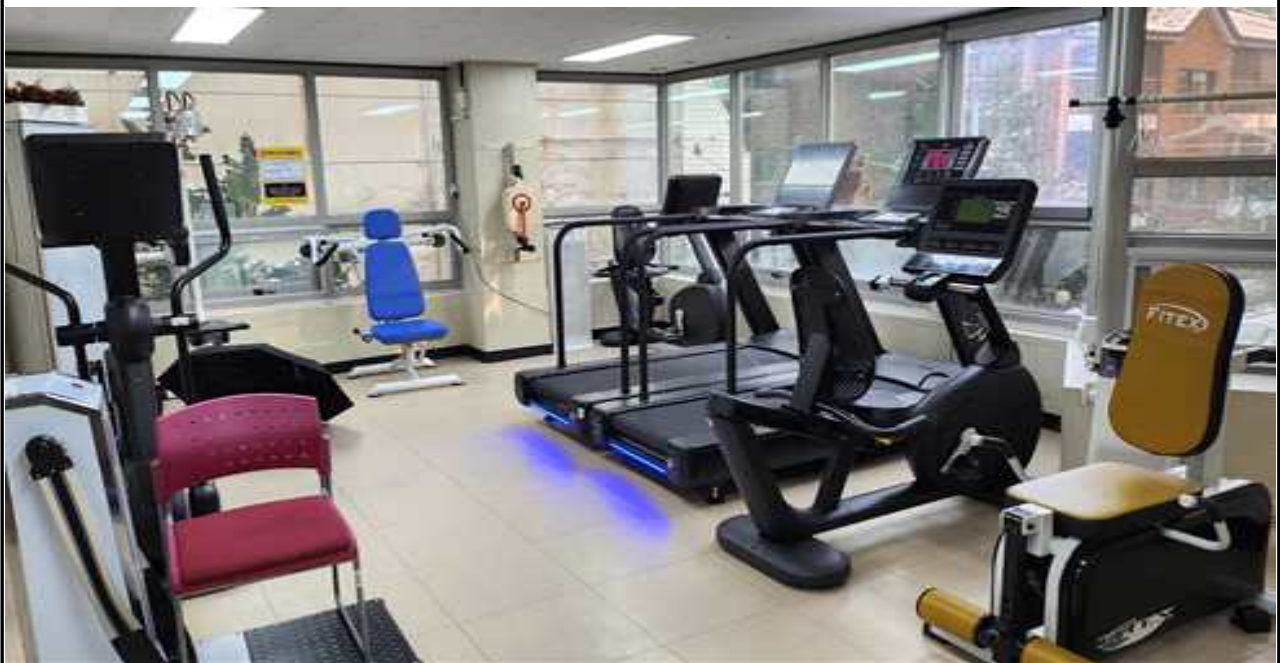
사진설명

푸른터 대강당(5층)



사진설명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내부(2층)



사진설명

체력단련실(2층)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안 건 명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재위탁〕			
부서명 (주관부서)	어르신행복과	부서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8877)
		팀 장	어르신복지팀장	이돈성(8856)
		담당자	어르신복지팀	이조은(8868)
시설개요	소 재 지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73-7		
	시설규모	연면적 1,724.5㎡		
	시설용도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 공간, 경로식당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26.12.22 ~ 2031.12.21(3년)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 위탁사무 내용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노인복지관 사업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서초구 어르신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구”가 요청하거나 승인한 사업 등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일자 : 2026. 6. 19.(금)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10명 서면심의서 제출 - 적정 의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서초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대우/02-2155-6396)				
어르신행복과장 귀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안 건 명	서초구립 서초노인주간보호센터 관리 운영(재위탁)		
부서명 (주관부서)	어르신행복과	부서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8877)
		팀 장	어르신돌봄팀장 이종서(8904)
		담당자	어르신돌봄팀 서지연(8871)
시설개요	소 재 지	서초구 강남대로 30길 73-7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건물 2층	
	시설규모	연면적 1,724.5㎡	
	시설용도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 공간, 경로식당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 2026.12.22 ~ 2031.12.21(3년)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주·야간 시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족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개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신체·인지기능의 유지 및 향상		
	○ 위탁사무 내용 -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2호에 해당하는 주·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심의결과	■ 적정		
	○ 심의일자 : 2026. 6. 19.(금) ○ 심의위원 : 총 10명 중 10명 서면심의서 제출 - 적정 의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서초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담당자/연락번호 : 김대우/02-2155-6396)			
어르신행복과장 귀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2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